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 성실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 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 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증식 ⇒ 징계(해임) 및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누락·과소신고액 과다신고액 |) 기준 적용

【 심사시 고려사항 】

- 잘못 신고한 재산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조제2항) ⇒ 보완명령
- 가중사항은 둘 이상이어도 한 단계만 적용(가중·감경이 경합하면 각각 1:1 상쇄)
- 가중·감경은 법 제8조의2'경고'이상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보완대상은 그대로 보완명령)

가중사항	감경사항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 제출이나 소명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계좌별, 항목별 1천만원 이상 재산을 20건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최초심사자인 경우 단,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본인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감경 제외

○ 과태료 이상(징계·해임) 처분은 아래 기준으로 상정

구 분	현 직	퇴 직	비고
공무원	징계의결요청	과태료	※ 최종처분은 위원회에서 사아벼리 파다
공직유관단체	해임요구 / 과태료	과태료	
정무직・선출직	과태료	과태료	

2.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처분기준

-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법 제8조제13항)
-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 5. 1~4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요구를 의결한 경우

○ 재산형성과정 처분기준

심사결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0_0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타법 위반사항 통보
거짓소명, 거짓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 거부	징계의결요구, 과태료부과
부정한 재산의 증식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나 공직자윤리법 상 확인 및 소명이 불가한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조사의뢰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항목은 신고하였으나 금액 단위, 면적, 주소, 지분 등 권리명세 오기
-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받은 제공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
- ex) 신고당시 제공받은 자료에는 없었던 계좌이나, 이후 금융기관이 위원회로 재회신하였을 때 포함되어 누락으로 인정된 경우
- 재산등록방법을 착오하여 다른 항목이나 비고 등에 신고(기재)한 경우 ex) 건물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채무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건물입대채무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재산등록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였거나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잘못 신고
-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중 재산, 친목회비 등 재산의 잘못 신고
-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
- ex)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혼소송 중으로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구거, 도로, 농지창고 등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잘못 신고
- 신고대상 재산이 없는 직계존비속을 누락
-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경우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잘못 신고한 처분금액에 포함하지 않음